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청년”이란 <u>18세</u> 이상 39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강서구”라 한다)에 <u>거주하는</u>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<u>구청장</u>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」 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<u>기본계획과 연계하여</u>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6조(청년 문화예술사업)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<u>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</u></p> <p>11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만 19세</u> ----- ----- ----- <u>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는</u> ----- -----.</p> <p>2.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<u>구청장은</u> ----- ----- ----- <u>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6조(청년 문화예술사업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원안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10. (원안 제11호와 같음)</p>